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3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청원권은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단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구민의 정책 참여욕구를 충족하고 권리 구제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있는 제도임.
- 나. 이에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정비하여 청원의 접수 및 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청원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삭제하는 등 그 동안 규칙을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원서의 보완요구 절차 사항을 개정함(안 제3조)
- 나. 청원의 불수리 요건 추가함(안 제4조)
- 다. 이의신청 요건 및 절차 사항을 개정함(안 제6조)
- 라.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청원인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 삭제(안 제2조 및 제14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로, “심사를” 을 “처리절차와 심사 등을” 로, “정함” 을 “규정함”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로,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청원서 보완요구)” 를 “(청원서의 보완요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하는” 을 “정한” 으로,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을 “못한 경우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로 한다.

제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불수리 사항의 통지)” 를 “(청원의 불수리)” 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청원
2. 감사·수사·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상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또 다시 제출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6조) 제1항 중 “구성·회부한다” 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로 하고, 제3항 중 “위원회와” 를 “특별위원회와” 로, “청원은 그 위원회” 를 “청원일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제1항 중 “청원이 「청원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을 “청원인은 제4조에 따라 불수리되거나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되, 해당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을 “(설명 의무)” 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원” 을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 를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를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을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올리지” 를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동작구” 를 “구” 로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 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제1항 본문 중 “부의할” 을 “부칠”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분의1” 을 “3분의 1” 로, “있을 때” 를 “있는 경우” 로, “부의하여야” 를 “부쳐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의하기” 를 “부치기”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청장” 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을 “의결된 경우” 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을” 을 “사항을”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회부” 를 “회부한 사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부의할” 을 “부칠” 로, “때” 를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결이 있을 때” 를 “의결된 사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고가 있을 때” 를 “보고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처리되었을 때” 를 “처리된 사항” 으로 한다.

제14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접수된 때” 를 “의회에 접수된 경우” 로 한다.

제16조 중 “때” 를 “경우” 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으로 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u>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u>자</u>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u>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u></p> <p>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u>의회의장</u>(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u>정하는</u>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u>상당한</u> 기간을 <u>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u> 요구할 수 있다.</p>	<p><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u></p> <p>제1조(목적) ----- ----- <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u>----- ----- <u>처리절차와 심사 등을</u> ----- - <u>규정함</u>-----.</p> <p>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u>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u>----- ----- <u>사람은</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제3조(<u>청원서의 보완요구 등</u>) ① ----- ----- ----- <u>정한</u> ----- --- <u>못한 경우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청원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u> ---.</p>

<신 설>

<신 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청원의 불수리) -----

- . -----

- .

1.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청원
2. 감사·수사·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에게 형상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 하는 사항인 경우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신 설>

<신 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5.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또 다시 제출한 경우

제5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구성하여 회부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특별위원회와 ----- 청원일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

④ 소관 상임위원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이 「청원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생략)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 (생략)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

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청원인은 제4조에 따라 불수리되거나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고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되, 해당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설명의무) (현행과 같음)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

원의 일비·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
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
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
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
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 (생략)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
의에 올리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동작구의 조치 또

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
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
례」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

② -----
----- 경우 -----

③ -----
-----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
원) -----
-----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에 부치지 -----.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동작구

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동작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행정여건이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 구-----

제11조(심사보고) ① -----
--- 부칠 -----

----- 3분의 1 ----- 있
는 경우----- 부
쳐야 -----.

② ----- 부치
기-----

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생략)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7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2. (현행과 같음)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

----- 의결된 경우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
----- 사항 -----

1. -----
-- 회부한 사항
2. ----- 부칠

3. ----- 의결된 사항
4. -----
----- 보고 사항
5. -----
----- 처리된 사항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 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
---- 의회에 접수된 경우-----

-----.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경우----- 「서울특별시
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원소개의견서

정원진명				
정원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인)			
소개연월일				
<u>소개의견</u> 				

<신 설>

[별지 제1호서식]

정원소개의견서

정원진명			
정원인	주소		
	성명		
소개의원	(인)		
소개일자	년 월 일		
소개의견(정원의 취지와 이유)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정원진명			
정원인	주소		
	성명		
소개의원	(인)		
정원제출일자	년 월 일		
이의신청사유(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별지 제2호서식]

정원철퇴요구서

정원건명				
정원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인)			
소개연필일		정원철퇴일자		
<u>철퇴요구사유</u>				

[별지 제3호서식]

정원철퇴요구서

정원건명			
정원인	주소		
	성명		
소개의원	(인)		
정원제출일자		정원철퇴일자	
<p>철퇴요구사유</p> <div style="height: 150px;"></div>			

청원 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소개의원	(인)	
소개일자	년 월 일	
소개의견(청원의 취지와 이유)		

이 의 신 청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소 개 의 원	(인)	
청원제출일자	년	월 일
이의신청사유(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청원철회요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소개의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